

# 고 소 장

고 소 인 이 이 이

ㅇㅇ시 ㅇㅇ구 ㅇㅇ길 ㅇㅇ

피고소인 김 △ △

박 △ △

최 🛆 🛆

피고인들 사무소: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

### 고소취지

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불법체포감금죄로 고소하고자 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.

## 고 소 사 실

- 1. 피고소인 4인은 ○○지방경찰청 마약수사과에 근무하고 있는 자들로서, 주임무로 마약사범 검거 및 수사를 담당하는 등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고 있는 사법경찰관들입니다.
- 2. 20○○년 ○월 ○일 오후 ○○시경 다방에서 사업관계자와 업무협의를 하고 있던 중 피고소인들이 들이닥쳐 대마초 흡입혐의로 체포한다며 수갑을 채우기에 고소 인은 체포영장을 제시하라고 하였으나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고소인을 연행하였습니다.

- 3.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을 주소불상의 장소에 데리고 가, 대마초 흡입사실을 형 하라면서 진술을 강요하였고, 고소인이 위 혐의사실을 자백하지 않아 피고 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자 하는 수 없이 다음날 새벽 ○○시경이 되어서야 고소인을 풀어주었습니다.
- 4. 이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고소인을 불법체포·감금한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소인들을 불법체포·감금죄로 고소하오니 엄중히 조사하여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입 증 방 법

1. 진술서

2000년 0월 0일

위 고소인 ○ ○ (인)

○ ○ 경 찰 서 장(또는 ○ ○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) 귀 중

			¥
제출기관	범죄지, 피의자의 주소,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, 검찰청	공소시효	○년(☞공소시효일론 <b>xx</b>
고소권자	피해자(형사소송법 223조) (※ 아래(1)참조)	소추요건	
제출부수	고소장 1부	관련법규	형법 124조
범죄성립 요 건	재판, 검찰,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		
형 량	・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		
불기소처분 등에 대 한 불복절차 및 기 간	<ul> <li>(항고)</li> <li>・근거: 검찰청법 10조</li> <li>・기간: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(검찰청법 10조4항)</li> <li>(재정신청)</li> <li>・근거: 형사소송법 제260조</li> <li>・기간: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동법 제260조 제2항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(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)</li> <li>(헌법소원)</li> <li>・근거: 헌법재판소법 68조</li> <li>・기간: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,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(헌법재판소법 69조)</li> </ul>		

#### ※ (1) 고소권자

(형사소송법 225조)

- 1. 피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
- 2.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, 직계친족, 형제, 자매. 단,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

#### (형사소송법 224조)

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[단,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에서는 "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(고소의제한)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."고 규정함]